

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
(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)

2019. 1.

국 토 교 통 부



## 1. 수입

<b>(1) 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</b>
54-543

### 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		2019년		증감 (B-A)	(B-A)/A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	
비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		2,869	2,869	2,875	2,875	6	0.2

### 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금에 대한 이자수입

### 나. 수입 개요

-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누적잉여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'18년말 누적 추정 잉여금 173,213백만원에 금융권 예치이자율 1.66%을 계상한 예금이자 소득 2,875백만원

### 다. 2019년 수입 계획 내역

-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(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)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2,869	'17년 추정잉여금(172,205백만원) × 1.66%(예상 금리)
2019계획	2,875	'18년 추정잉여금(173,213백만원) × 1.66%(예상 금리)

<b>(2) 기타민간이자수입</b>
54-544

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수입이자	-	6	6	13	13	7	116.7

**가. 법적 근거**

-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제5항

**업무처리규정 제13조(분담금의 관리)** ⑤ 제2항에 따른 이자계산은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기준월 말일(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)의 CD금리를 적용하되, 이자계산 기간은 보상금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, 구상금의 경우 구상금이 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각각 제14조에 따른 정산일까지로 한다.

**나. 수입 개요**

- 수입 내용 : 수입이자
    - 손해보상금환입\*된 날과 기금관리자에게 납부한 날의 기간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
- \* 손해보상금환입 : 보험회사가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

**다. 2019년 수입 계획 내역**

-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(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)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6	· '18년 손해보상금환입(10,919백만원) x 금리 1.52% x 15/365일
2019계획	13	· '19년 손해보상금환입(8,632백만원) x 금리 1.66% x 35/36일

<p><b>(3) 법정부담금</b></p> <p>59-593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법정부담금	32,986	31,708	31,708	33,183	33,183	1,475	4.7

**가. 법적 근거**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, 동법 시행령 제31조, 동법 시행규칙 11조

**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분담금)**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내야 할 자 중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의 분담금은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회사등이 해당 납부 의무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징수하여 정부에 내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3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금액과 납부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자배법 시행령 제32조(분담금의 납부 등)**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징수 명세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
**자배법 시행규칙 제11조(분담금액)** 영 제31조제1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책임보험의 보험료(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)의 1,000분의 10을 말한다

**나. 수입 개요**

- 수입내용 :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
  - 책임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국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일정비율\*을 징수
    - \* 책임보험료 또는 책임공제금액의 1%를 법정부담금으로 징수
  - 보험회사 등이 책임보험가입자로부터 책임보험료에서 분담금율을 곱한 금액을 책임보험료와 함께 납부 받은 후 익월말일에 기금관리자에게 분담금 납부

## 다. 2019년 수입 계획안 내역

### ○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31,708	▪ '14~'16년 평균감소율 1.6% 반영
2019예산	33,183	▪ '17년 분담금 징수액 대비 0.3% 증가 및 '18년 오차 반영

<b>(4) 기타 경상이전수입</b>
59-596

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기타경상이전수입	11,044	25,636	25,636	21,753	21,753	△3,883	△15.1
· 손해보상금환입	9,367	10,919	10,919	10,919	10,919	-	-
· 위탁사업비반납	1,677	14,717	14,717	10,834	10,834	△3,883	△26.4

**가. 법적 근거**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(청구권 등의 대위) ①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(代位行使)할 수 있다

**나. 수입 개요**

- 수입내용 : 손해보상금 환입 및 위탁사업비 반납액
  -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시행 후 무보험·뺑소니 야기자에 대한 구상 회수 금액
  - 위탁기간에 교부한 사업비의 결산 후 잔액 반납액

**다. 2019년 수입 계획 내역**

-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25,636	* 손해보상금환입 10,919백만원, 위탁사업비 반납 14,718백만원
2019예산	21,753	* 손해보상금환입 10,919백만원, 위탁사업비 반납 10,834백만원

(5) 기타 민간융자원금회수

75-754

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기타민간융자 원금회수	2,260	2,117	2,117	2,492	2,492	375	17.7

가. 법적 근거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2조(지원의 기준 및 금액)제22조(지원의 기준 및 금액)
  -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2. 유자녀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지원
      - 가. 생활자금의 대출

나. 수입 개요

- 수입내용 :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금 상환금액
  - 대출기간 및 금액 : 최초 대출일로부터 만 18세(고교 재학 중인 경우 졸업하는 날)되는 달 까지 매월 20만원 무이자 대출
  - 상환방법 : 자녀가 30세가 되는 달부터 최대 20년 분할(월/분기/반기/년)상환

다. 2019년 수입 계획 내역

-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2,117	* 전년도 대출상환액의 5% 증가
2019예산	2,492	* 전년도 대출상환액의 5% 증가 및 '18년 오차 반영

<b>(6)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</b>
85-852

<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	214,184	172,205	172,205	173,213	173,213	1,008	0.6

**가. 법적 근거**

-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(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)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에 따라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한 금액

**나. 수입 개요**

- 수입내용 : 여유자금
  -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사용 후 누적된 여유자금

**다. 2019년 수입 계획 내역**

-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(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)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	금 액	편성근거 및 산출내역
2018계획(수정)	172,205	'17년말 여유자금 추정치
2019예산	173,213	'18년말 여유자금 추정치

## 2. 지출

<b>사 업 명</b>
(1) 의무보험전산망 (4641-300)

### 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계정명 (계정구분 없을 시 공란)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0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의무보험전산망

### 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## 가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안	조정안(B)	(B-A)	(B-A)/A
의무보험가입관리 전산망	2,321	2,427	2,427	2,501	2,381	△46	△1.9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- 의무보험 미가입자, 무보험 운행정보,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 관련 정보제공 등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운영을 통하여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편의성 제공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, 제45조, 제39조의 12,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5조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유지 및 관리
- ② 추진경위
  - '63.04 :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의무화
  - '77.12 : 중기관리법상 5종중기 및 이륜자동차 추가
  - '84.12 : 모든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의무화
  - '92.04 : 만기안내, 미가입자에 대한 통보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 신설
  - '92.07 : 건설기계중 타이어식 굴삭기 추가, 사업용차량 대인Ⅱ의무화('91.12)
  - '95.12 : 보험개발원이 보험전산망 및 M/T를 이용하여 자료집적. 타사이전가입여부 및 등록변동사항 일괄확인
  - '96.02 : 전국시군구청 일괄전송 등 전산서비스 실시
  - '01.07 :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처분규정 시행
  - '02.02 :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축
    - . 자료추출주기(월1회→3회) 및 처리기간 단축(2~3개월→1개월)
    - . 검사기관 등 정부 전산처리조직과의 연계
  - '03.08 : 임시운행 허가시 의무보험가입사실확인 의무화
    - . 의무보험가입관리전산망 구성·운영 근거 신설(보험개발원 위탁)
  - '03.12 : SOFA차량 등록시 책임보험 확인
    - . 제10차 SOFA 특별대책반 회의에서 SOFA차량관리제도 일원화 방침
  - '04.12 : 전산망을 이용한 무보험운행자 정보 제공
  - '05.02 : 대물배상보험 가입 의무화로 미가입자 통보업무 추가
  - '07.06 : 보험회사 등이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 및 해지자료에 대하여 지침에서 규정 하던 내용을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 마련

- '07.12 :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시행
- '08.09 :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험사의 계약체결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
- '10.02 : 자동차 신규등록시 의무보험가입관리 강화
  - 임시운행자동차 보험만으로 신규등록 금지
- '11.11 : 50CC미만 이륜자동차 가입의무화
- '12.08 :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(6개월-2년), 번호판 영치 해제시 보험가입확인, 사법경찰 무보험차 단속권 부여(자배법 개정) 등
- '13.08 : 보험개발원과 현대정보기술의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(3년)
- '15.02 : 건설기계 3종(트럭지게차, 도로보수트럭, 자주식 노면측정장비) 추가 의무화
- '16.08 : 보험개발원과 LG엔시스와 통합유지보수계약 체결(3년)
  - \* 보험개발원은 나라장터에 입찰공고하여 제안업체들이 제시하는 유지보수율 등 가격 10%와 기술 90%의 비중으로 제안평가를 실시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최종 사업자와 서비스 조건 등 조율 후 3년간 장기계약 체결
- '16.12 : 분담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

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 의무보험계약정보의 실시간 제공서비스(행안부, 복지부, 경찰청, 시군구청, 자동차검사소, 자동차보유자, 보장사업자, 보험사, 공제사)를 위한 전산망센터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(주센터, 백업센터, 민원상담센터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보험개발원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보유자, 자동차등록사업소, 과태료담당, 무보험운행담당 특사경, 번호판 영치·해제 담당, 사법경찰, 자동차검사소, 건설기계검사소, 손해보험회사, 공제사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2) 피해자지원(4641-30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1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피해자지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지출계획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안	조정안(B)	(B-A)	(B-A)/A
피해자지원	28,072	29,336	29,336	28,208	23,523	△5,813	△19.8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- 자동차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지원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
- ② 추진경위 : '00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등 지원업무 개시

##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 재활보조금 5,071명(12,170백만원), 장학금 1,321명(1,585백만원), 피부양보조금 1,000명(2,400백만원), 자립지원금 1,003명(722백만원) 등 총 8,395명(16,877백만원)에게 경제적 지원 및 심리안정지원 서비스, 유자녀 멘토링 서비스 등 정서적 지원 시행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교통안전공단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  
(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~4급의 중증 후유장애인 이면서,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)
- 보조, 용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3) 정부보장사업 (4641-302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2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정부보장사업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예산		2019년		증감	
		본예산	수정(A)	요구	조정안(B)	(B-A)	(B-A)/A
정부보장사업	20,760	22,652	22,652	21,230	20,114	△2,538	△11.2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정부보장사업 시행으로 불법차량에 의한 국민안전 보장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
- ② 추진경위
  - '78. 4 : 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 시행
  - '85. 7 : 무보험차 피해자 지원 추가
  - '02. 8 : 보장사업업무 위탁사업자 확대 지정(1개사→8개사), 분담금관리자로 협회 지정
  - '05. 7 :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시행(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 협회 지정)
  - '09. 2 : 미반환가불금 보상비율 상향(70%→ 100%)
  - '10. 2 : 채권정리위원회 운영 위탁
  - '12. 9 : 뺑소니사고 신고포상금 지급업무 위탁

##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부보상(부상·후유장애시 최대 1.5억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
- 사업 수혜자 : 무보험·뺑소니 사고 피해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4) 생활지원 및 학자금 용자 (4641-303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3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생활지원 및 학자금(용자)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용자	국고보조율(%)	용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지출계획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안	조정안(B)	(B-A)	(B-A)/A
생활지원 및 학자금(용자)	2,732	3,360	3,360	1,807	1,807	△1,553	△46.2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-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22조
- ② 추진경위 : '00부터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사망자 가정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

##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 대상자 753명(1,807백만원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한국교통안전공단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사고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 및 그 가족  
(사망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~4급의 중증 후유장애인 이면서,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정)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

사 업 명
(5) 국립교통재활병원(4641-304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4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국립교통재활병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%	

가. 지출계획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안	조정안(B)	(B-A)	(B-A)/A
국립교통재 활병원	2,708	3,553	3,553	7,340	3,480	△73	△2.1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- 아급성기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재활전문병원에서 집중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
- ② 추진경위: '14. 10월부터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재활환자의 재활치료 개시

##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3,480백만원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 전체 299명상 중 ( 201명상 운영 )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가톨릭중앙의료원(위탁운영)
- 사업 수혜자 : 급성기의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및 교통사고 환자
  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없음

사 업 명
(6)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4641-306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4600	4641	306
명칭	자동차및교통정책	자동차사고피해지원	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	

가. 지출계획안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년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안	조정안(B)	(B-A)	(B-A)/A
자동차손해 배상진흥원	-	-	-	1,500	650	-	-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- 자동차손해배상제도(정비·자보진료수가 등) 개선 및 보장사업(정부보장사업, 미반환가불금, 피해지원사업 등)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손실 최소화를 위한 정책수립 등

### 2) 사업내용

#### □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의12(기금의 조성 및 용도)
- ② 추진경위
  - '79.6~'97.12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'97년까지 5개 공제조합 허가
    - \* 택시('79.6)·화물('81.7)·버스('81.12)·개인택시('93.2)·전세버스('97.12)
  - '12.10 렌터카 공제조합을 별도법인으로 인가
    - \* (현황) 공제 가입대상은 82만대, 연간 보험규모는 1.5조원 수준('17년말 기준)
    - \*\* (문제점) 연합회 부대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운영, 보상민원 증가 등 개선 필요
  - '05.9~'14.6 3~4년마다 보상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·시행하였으나, 근본적인 해결에는 실패
    - \* '14.6월 보상서비스 개선,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 마련, 민원평가 시행하고 전담지부장제와 진흥원 설립을 추진
  - '13.12~'16.1 전문적인 공제조합 지도·감독과 손해배상제도 연구·지원 등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 추진의 법적 근거 마련
  - '17.12~'18.3 운수단체 간담회, 운수단체 연합회장 개별 면담(총15회) 등을 통해 진흥원 추진 설득 및 협의
    - \* 국토부·연합회가 참여하는 진흥원 추진협의회·설립준비단 회의(10회) 등을 통해 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 등 제반사항을 협의
  - '17. 5 발기인 총회·이사회 개최, 원장,사무실 확정 등 8월개원 준비 중

#### □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 해당사항 없음
- 사업기간 : '19.1.1. ~ '19.12.31.

- 사업규모 :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
- 사업 수혜자 : 조합원, 교통사고피해자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없음

사 업 명
(7) 통화금융기관예치금 (9701-971)

□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기금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자동차사고	국토교통부	교통물류실 자동차관리관		120	126
명칭	피해지원기금				교통및물류	물류등기타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
코드	9700	9701	971
명칭	여유자금운용	여유자금운용	통화금융기관예치금

□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(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. 해당사항에 ○ 표시)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○					100	

가. 지출계획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목명	2017 결산액	2018년 계획액		2019년		증감	
		당초	수정(A)	요구	조정(B)	(B-A)	(B-A)/A
통화금융기관 예치금	207,290	173,213	173,213	170,923	181,574	8,361	4.8

## 나. 사업설명자료

### 1) 사업목적

자동차보유자로부터 책임보험료의 1%를 징수하여 누적된 잉여자금

### 2) 사업내용

####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- ① 법령상 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7조
- ② 추진경위 :

#### 주요내용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
- 사업기간 : '19.1.1 ~ '19.12.31.
- 사업규모 :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
- 사업시행주체 : 손해보험협회
- 사업 수혜자 : 자동차 보유자 및 일반 국민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·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: 해당사항 없음